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4. 6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4개 스포츠신문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11공동1642) | (주)한국일보사, (주)스포츠서울21, (주)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신문(주)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스포츠신문의 판매가격을 1999. 10. 1부로 각각 1부당 가판가격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25%, 월정 구독료는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1.1% 인상함에 있어, 일간스포츠신문의 판매가격은 각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8. 13., 8. 20., 9. 2. 3회에 걸쳐 판매팀장 등 관계자들이 모임이나 전화통화 등 상호연락을 통해 인상을 및 인상시기 등을 논의·결정하여 일간스포츠신문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2000. 4. 11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주)나래엔컴퍼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1광고1630) | 주식회사 나래엔컴퍼니는 1999. 10. 27 ~ 11. 8 기간 중 자사 제품 전화번호부인 「나래엘로우페이지」에 대하여 3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경쟁사업자의 전화번호부로 오인가능한 전화번호부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전화번호부가 있는가 하면...', '한두번 뒤져보면 그만이었던 기존 전화번호부에 비해 생활에 매우 유용한 전화번호부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하여 마치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자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고 전혀 불필요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 위반 |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2000. 4. 14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북인천케이블TV방송(주) | 북인천케이블TV방송 주식회사는 1999. 8월말부터 10. |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p>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9911유거1549)</p> | <p>14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에서 자사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중계유선방송 시청세대가 자사 케이블TV방송으로 가입전환할 경우에는 설치비 30,000원을 전액 면제하는 방법으로 약 380세대의 고객을 유치하여 중계유선방송시장 및 다채널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 <p>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지방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p>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114)</p> | <p>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은 북공판협의회로부터 북공판 생산의 6가지 최소설비요건을 조합의 가입조건으로 해줄 것을 건의받은 후, 1999. 10월경 북공판만을 생산하는 업체인 충북 보은 소재 부세산업(주)의 조합 가입신청에 대하여, 북공판 생산업체가 조합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업활동이 어렵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이나 법적 근거규정도 없이 북공판 생산설비 6가지 요건 중 3가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입신청을 반려하여 북공판 생산시장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2호 위반</p> |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함</p> |
| <p>도서출판대원(주) 및 (주)학산문화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경축0178)</p> | <p>도서출판대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학산문화사는 1998. 9월 이후 대구지역의 만화출판물 지역총판인 대도유통(주)(이하 "대도유통"이라 함)와 거래하면서, 지역총판은 자율적으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약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구역을 벗어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1999. 10. 12. 대도유통이 구미, 경주, 김천, 안동 등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대도유통에게 경고하고, 1999. 10. 13. 대도유통으로부터 향후 관할구역 외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았으며, 1999. 12. 31. 자신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도유통이 관할구역 외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대도유통과의 거래를 중단하여 지역총판들간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p> | <p>◎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총판들과의 거래약정서 제12조의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거래처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

2000. 4. 17 심결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주)신동의 기업결합신고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결0275) | 주식회사 신동은 1999. 4. 14. 계열회사인 (주)일신흥업과의 합병등기를 한 후, 법정신고기한인 30일을 경과하여 2000. 2. 7.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2조제4항 위반 | ◎ 과태료 납부 : 3,000천원 |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전사0295)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9. 8. 20. 회원조합들에게 축협사료를 일반사료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료업무취급요령상에 축협사료의 취급을 우선 원칙으로 하거나 축협사료의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사료업체의 사료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사료공장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의 사료공급구역을 인근 시·군·도로 한정하고 필요시 사료판매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신이 필요시 사료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정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회원조합에게 발송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 ◎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합사료업무취급요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 |

2000. 4. 20 심결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에스케이상사(주)의 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9911약제1613) | 에스케이상사주식회사는 국내 학생복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사업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상에 자신의 영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겸업을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리점이 상품을 수취한 후 즉시 검품하고 상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상품 인도 후 1주일이 경과하면 모든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위반시 대리점에 대한 채무의 이행없이 약정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전부를 자신의 청구에 의해 현금으로 즉시 지급토록 규정하는 등 대리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 | ◎ 대리점계약서 제6조제6항,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 |

심 · 결 · 사 · 례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p>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 원자력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9912독관1840)</p> | <p>한국원자력연구소는 장의업자인 을지의전공사와 1998. 8월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운영 계약을 1년간 체결하고 임차인인 을지의전공사에게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을지의전공사가 월사용료 지연납입시 1일당 2.5/1,000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총 7,498천원의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빈소사용료 및 시신냉동비 등 총 67,995원을 계약상 근거 없이 징수하였으며, 장례식장 운영·임대차 계약내용에 자신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계약내용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자신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 <p>◎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을지의전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

2000. 4. 26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p>대양주유소의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부사0148)</p> | <p>대양주유소는 자신의 사업장에 SK(주)의 상표를 표시인 등에 표시·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월 실제로는 SK(주)의 석유제품 외에 다른 석유정제업자인 현대정유(주)의 석유판매대리점인 (주)혜성석유로부터 경우 20천리터를 구입·판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7조 위반</p> | <p>◎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사업장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크기로 공표문을 작성하여 7일간 부착하여 공표토록 함</p> |